

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적용 사례  
농림수산부는 경기도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양축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약사법 제72조의6제4항(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고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배약할 수는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원을 별도채용하여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회신 하였다.
2. '95 현장에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제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로 기술개발사업은 농이민이 영농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성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상과제는 년도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년중 각시도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현장에로 기술개발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통합공고중 개정고시·승부  
통합공고(제1994-130호)중 개정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협회의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회원사는 관련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무료배부하고 있다.  
가. 완제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 신청서에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입」을 명기  
나. 농림수산부 장관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호르몬제를 제외한 품목을 동일 수입자가 재 수입코자 할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요건확인(추진)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 별표II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의하여 수입 신고대상 완제 동물용의약품(HS2309류)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협회가 공고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의하여 협회에 수입품목 신고를 필한후 요건확인(추진)을 받아 수입

4. 동물용의약품 요건확인 세부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 수입추천(신고)요령 가. 수입추천(신고) 대상자 및 대상자 (2)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것으로 제조 회사명 및 소재지, 제품명, 원료약품 및 분량, 품목허가(등록) 번호 및 허가(등록)일자와 생산국 법규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고 자국내에서 판매 및 수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수입추천(신고)요령 가. 수입추천(신고) 대상자 및 대상자 (2).....( 현행과 같음 )..... ..... ..... 다만,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수의사회장이 추천한 희귀 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성분, 효능·효과, 용법과 용량, 포장단위, 유효기간, 주의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희귀 및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성분, 효능·효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에 이를 포함 시키도록 함.
(4)동물병원 등(연구기관, 교육기관, 농장)에서 자가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동물병원 등(연구기관, 교육기관, 농장)에서 자가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증 사본 및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를 명확히 함.
(5) (신설)	(5)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 신고대상 품목으로 조치한 완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입품목 신고증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하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성분·함량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조치된 완제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입품목 신고증을 제출해 하고 불합격질의 동물용의약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함.
나. 수입추천(신고) 대상품목 (2)완제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 동물용의약부의 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품목 허가한 품목에 한한다.	나. 수입추천(신고) 대상품목 (2).....( 현행과 같음)..... .....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을 동일 수입자가 재수입 하고자 하는 품목에 한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조치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필한 품목에 한한다.	· 협회에서 요건 확인하는 완제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입 신고 대상품목으로 조치된 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수입 품목신고 필한 후 수입 하도록 함.
(3) (신설)	3)동물용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은 약사법 제2조 제9항제10항에 의한 것으로 동물용에 한한다.	· 동물용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통관 예정신고 요령 나. 신고 절차 국가검정에 합격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을 통관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하는 자는 통관 3일 전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2. 통관 예정신고 요령 나. 신고 절차.....(현행과 같음).....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검정이 불가능 하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품목과 특수 저장방법 등에 의하여 통관전 검정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농림수산부장관이 검정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품목과 통관전 검정을 위하여 특수 저장방법을 요하는 품목은 국가검정 합격전 통관 할수 있도록 함.